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0. 12. 8.)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 목 차 】

1.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
2.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8
3.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7
4.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1
5.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24
6.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36
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8.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9. 거창군세 기본 조례안-----	57
10. 거창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1
1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8
1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13.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14.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15.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7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의 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운영절차의 개선과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
-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 제도를 통합·개선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실시제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모든 국민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안의 제출방법과 제안의 접수 및 보완,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기간과 채택 여부 결정사실의 통지, 제안의 심사기준,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등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과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우수제안의 등급을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하고,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안에 대한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아.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제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지급방법,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직무발명 또는 직무고안이거나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의 그 권리의 승계 등 제안에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채택제안 및 불채택제안의 관리기간과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차.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준용, 조례의 세부시행에 따른 규칙 위임사항

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당초예산 확보(10,800천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2. ~ 11. 10.)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의 제정과 「공무원의 제안규정」이 개정 운영됨에 따라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능률 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제안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전 국민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우편이나 인터넷 등 제안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제안심사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등급결정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

- 또한 우수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며 각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별표1)과 예산절감, 재정수입 증대 및 행정개선 등의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별표2)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로서 군민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임에도 공무원이 아닌 군민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안 제14조)을 보면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시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상금 외에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조례제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2-2100-3457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0. 3.22] [법률 제10147호, 2010. 3.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91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10. 4. 7] [대통령령 제22108호, 2010. 4.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2100 - 3776

제12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

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11>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1.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확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11>

제15조(특별승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7]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1호, 2010. 1.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 2100 - 3776

제9조(창안상여금) ①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별표 5] <개정 2007.1.12>

채택제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2. 개정이유

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의 신고의무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방법 및 처리기간을 정함(안 4조)
- 라. 감사부서 직원은 신고의 접수,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 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 문책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 장치를 규정함(안 제7조).

사. 피신고자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 시 사실조사를 통해 징계조치 등 보복행위 금지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거짓신고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거짓신고를 예방토록 함(안 제10조)

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11조).

○ 지급방법: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

○ 지급 상한액: 2천만원

카.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12조).

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환수 근거를 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11년 당초예산 확보(20,000천원)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11. 1. ~ 11. 20.)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우리군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

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및 군민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의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규정함.
-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 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또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상한액 2천만원)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 ◇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신고자 보호 강화 및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제·개정 권고

I. 운영 실태

- 지자체*는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 * 대전, 울산, 강원 등 3개 시·도 제외(조례 미제정)
 -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출자·출연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부조리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또는 일반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 시·도별로 부조리 신고제도의 정의, 절차 등은 유사하나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장 등은 상이함
 - 신고 공무원에게만 포상금 지급(부산), 서면으로만 신고서 제출 (6개 시·도), 신고자 보호장치 미운영(4개 시·도) 등
- 시·도별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서울·경기만 지급실적 있음
 - 서울(총 28건, 75백만원) : '07년 6건, '08년 11건, '09년 11건
 - 경기(총 2건, 12백만원) : '09년 2건

▪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

※ 보상·포상금 지급현황('02~'09) : 총 131건, 2,036백만원

II. 운영상 애로점

-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 정도로 취급하는 관행으로 신고 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직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
- 내부인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신고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 감사부서를 배제한 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부기관 등에 정보 제공

III. 개선 방안

□ 신고자 신고방법의 다양화

< 현 행 >

-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남 등 6개 시·도는 서면 제출 원칙
- 서울·광주·경기·충북·충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는 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
-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허술

< 개 선 >

-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등),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 인터넷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주민번호인증 확인 또는 공공 I-PIN* 서비스 방안 등 도입 유도

* 공공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회원가입, 주민번호 사용없이 본인확인 가능서비스

□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 현 행 >

- 신고자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 조항만 조례에 포함
- 대구·인천·전남·제주 등 4개 시·도는 신고자 보호 조항 없음

< 개 선 >

- 신고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시 원상회복 요청(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행위 등 금지(신변보호)
-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받을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 강구(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 포상금지급 개선

< 현 행 >

- 유형별(향응·금품수수, 재정상 추징·환부, 알선·청탁 등)로 지급하되, 지자체별로 포상금 지급 상한선(1천만원~1억원)을 정하여 운영
 - ※ 현재 부산·광주·전북·경남은 최고 1천만원, 인천·전남은 최고 1억원 지급, 부산은 최고 10억원으로 인상 예정
-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해 신분노출 위험

< 개 선 >

- 신고 포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 ※ 포상금은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

IV. 조치 계획

-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지침 시달('09.2)
-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개정 권고안 시달('09.2)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게 하고,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설치근거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와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 간사, 관계 기관 등에 의 협조 요청, 수당,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에 반영(1,760천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6. ~ 10. 25.)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2010. 7. 1시행)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 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역할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원의 수당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조례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55호, 2010. 4.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2-2023-8199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아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위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나.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조)

-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등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며
-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함

다.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을 정함(안 제9조,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6조

나. 예산조치: 2010년 예산에 반영(14,180천원)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9. 14. ~ 10. 3.)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2010. 7. 5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며 아동복지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복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6조(아동위원) ①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11. 17

2. 개정이유

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세대의 구성원인 손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으로서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로 하되, 손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
 - 조부모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미만이라도 조부모가 3개월 이상 무직이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안제4조)
 - 제1계층(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세대) : 조손가정수당, 명

절위로금, 학습지원, 성장지원

○ 제2계층(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학습지원, 성장지원
라.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방법과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예산사업(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학습지원, 성장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도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 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함

마.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실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에 지원내용을 알려 신청을 권고할 수 있음

○ 군수는 지원신청이 있으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바.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제8조)

○ 군수는 조손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되, 비예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지정기탁을 권고할 수 있음

사. 조손가정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조손가정수당(세대당 월 5만원)과 명절위로금(세대당 20만원, 설·추석명절 연 2회)은 지원대상자 개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되, 다른 사업으로 현금지원이 추가될 때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 및 성장지원 등의 인적·물적서비스

는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함

아. 지원대상자의 명단 및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및 소득 등 변동사항
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중지사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세대구성원의 변동으로 요건을 상실한 경우, 연령 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에 반영(48,000천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8. ~ 10. 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손자녀의 바른성장을 지원하기 위

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으로서 18세미만의 손자녀와 65세이상의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으로 하며
-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계층별(제1계층, 제2계층)로 구분하며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 조손가정 수당은 세대당 월5만원으로 하며, 명절위로금은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함.
- 또한 조손가정으로 지원받든 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조손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운영으로 조손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안 제2조(정의) 제1호 가목내지 나목에서는 지원대상 세대 중 소년소녀가정 아동양육비(월10만원) 또는 가정위탁 아동양육비(월10만원)등 공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적지원금(월1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월5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군내의 조손가정 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0. 8.18] [법률 제10302호, 2010. 5.17, 일부개정]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18] [여성가족부령 제6호, 2010. 8.17, 일부개정]

제3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본조신설 2008.1.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2010.1.1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